

	<h2>학생회장선거규정</h2>	규정번호	5-1-4
		제정일자	1985.06.03.
		개정일자	2024.09.01.
		개정차수	6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을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여,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제2조(선거권) ① 학생회 회원으로 해당하기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제3조(피선거권) 학생회 회원으로 해당하기 등록을 한자로서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1. 기독교정신을 가진 자로서 행실이 바르고 지휘·통솔능력이 있는 자
2. 선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3. 재학 기간중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당해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제4조(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5조(선거시기)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의 임기만료 학기인 2학기 중에 선출 한다.

제6조(선거비용)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 한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학생회장·학생부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선관위 구성은 현 학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에는 대의원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③ 현 학생회 임원은 선거 사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피선거자일 경우 제외 된다.

제8조(구성시기 및 해체)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개시 20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 하고 선관위 명단과 선거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사전에 학생성공처장에게 통지 하여 한다.

② 선거 종료후 7일 이내에 해체 한다.

제9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절차(일시)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10조(금지사항) ① 선관위원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 3 절 입후보자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공고

제11조(입후보자 등록) ①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은 공동입후보로 등록한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서 지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명함판사진 첨부 3매 - 선관위양식
2. 선거권자 3개 학과 30인 이상의 추천서
(다만, 추천자는 한 후보자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3. 소속학과 학과장 추천서 1부.
4.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통
5. 입후보 소견서(회장·부회장 공동작성) - 선관위양식

③ 선관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 확정시 학생성공처장에게 보고 후 공고 한다.

제12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투표)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관위원장은 투표절차를 투표당일 이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 ③ 선거권자는 1인 1기표 하여야 한다.(단 후보자가 한팀시 찬반에 표기)
- ④ 선관위원장은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투표일 전일까지 설치 점검하여 한다.
- ⑤ 투표용지는 1인 1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회손 및 분실시 재교부하지 않는다.
- ⑥ 기타 투표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참관) ①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한 팀당 1명으로 제한하여 입회 할 수 있다.

② 선관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투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15조(개표 및 참관) ①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설치 운영한다.

- ② 참관인은 각 후보 및 후보가 지명한 2인 이내에서 입회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시 후보를 통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제기 하여야 한다.

제1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사용한 하지 않은 것.
2. 선관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기타 선관위원장이 인정한 사항외의 것.

제17조(당선인 결정) ①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은 공동 입후보 하여 본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서 최다득표 팀을 당선으로 한다.

- ② 입후보가 단일팀인 경우 총투표자수의 2분의 1 이상을 득표 하여야 당선으로 결정한다.
- ③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가 자진사퇴 하였을 경우 대의원 중에서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을 당해연도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대의원의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18조(당선공고)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총장의 인준을 받아 당선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 한 직후부터 선거전일 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비용은 학생자치 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선관위원장은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금지사항)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접대, 폭행, 협박, 상호 비당등 공정선거에 위배되는 운동은 할 수 없다.

제22조(후보자격 상실 및 당선무효) 선관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2. 추천서 및 증명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5.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6. 제3조에 의거 자격 미달인 자

제 5절 보궐선거

제23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생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직무대행을 학생회 임원 중 지명하여 학생부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학생회장·학생부회장의 일신상의 이유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이하 인 경우에는 대의원의장·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생회장선거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및 당선 무효시에는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을 선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